

2013년 대한국제법학회 모의재판경연대회 문제

1. Dexia 지역에 소재한 Prosperia와 Montania는 100km에 달하는 국경을 공유하고 있다. 50만km²의 면적에 5,000만의 인구를 가진 Prosperia는 19세기말 산업혁명에 성공한 이래 기계, 조선 등 2차 산업이 크게 발달하였고 2013년 현재 GDP가 1조 달러에 달한다. Montania는 10만km²의 면적에 80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활동인구의 80% 이상이 농업 및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GDP도 2013년 현재 300억 달러에 불과하다.

2. Montania는 다민족 국가로서 Prosperia와의 접경지역인 Parvia에 인구 50만의 Parvus족이 살고 있고, 이들은 전체 인구의 60%를 점하는 Magnus족과는 언어와 종교가 다르다. Parvus족은 산악지대에서 주로 소규모 목축업에 종사하는데 이들의 소득의 Montania의 평균 소득의 1/3 정도이다. Parvus족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사정 으로 인해 약 10만 명이 Prosperia로 이주하여 주로 하급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3. Prosperia의 집권당은 영구혁명당(Party of Permanent Revolution, 58년째 집권)이며, Prosperia는 외국 언론과 학자들에 의해 권위주의적 체제로 평가 받고 있다. Prosperia 정부 내에서 내무부 장관직을 10년째 수행하고 있는 Ambitiono는 자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정치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리더십을 과시하기 위해 Prosperia가 Dexia 지역에서 맹주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Ambitiono는 국내외 언론에서 “정권의 실세”로 보도되고 있으며, Montania를 비롯한 외국 방문 시 정부 수반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 왔다. Montania 외교부의 의전실 내부분서에도 Ambationo에게 Prosperia의 수상과 동일한 의전기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Dexia 지역 내 위상 강화를 추구해 온 Prosperia는 2004년 Ambitiono의 제안에 따라 지역 내 국가인 Amalfia (인구 1,000만, 면적 15만km², GDP 1,000억 달러), Batania (인구 500만, 면적 8만km², GDP 300억 달러), Montesanto (인구 600만, 면적 12만km², GDP 600억 달러)와 함께 지역 내 경제발전을 위한 지역적 국제기구(Dexia Economic Development Organization, “DEDO”)를 창설하였다. 이 기구를 설립한 4개국 간 조약 제1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a) To carry out its purposes and functions, the Organization shall possess legal capacity and, in particular, the capacity to: (1) contract; (2) lease or rent real property; (3) acquire and dispose of personal property; and (4) institute legal proceedings. Members may accord the Organization such legal capacity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where necessary for the Organization to carry out its purposes and functions.

(b) No Member shall be liable, by reason of its status or participation as a Member, for acts, omissions, or obligations of the Organization.

5. 이 기구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였는데, 기금의 85%는 Prosperia가 출연하였으며, Prosperia가 매년 납부하는 분담금 역시 85%에 달한다. 이 기구 내에는 집행이사회와 사무국이 설치되었는데, 집행이사회 의장과 사무총장은 모두 Prosperia의 전직 외교관이 임명되었다. Montania는 Prosperia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여 DEDO에의 참여를 거부하였는데, 이 기구에의 동참을 촉구하는 Prosperia의 외교적 압력이 증대하였다. 특히 DEDO는 Parvia 지역에 댐을 건설하는 사업을 Montania에 제안하였다. Montania는 자국이 댐 건설을 감독할 만한 과학적 지식과 노하우(know-how)가 부족함을 이유로 이러한 제안을 거절하였다.

6. DEDO의 끈질긴 제안에 Montania는 2007년 DEDO와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였다. 이 문서에서 Montania는 자국 내에서 DEDO의 법인격을 인정하고("The Government of Montania shall accord the Organization full legal capacity in accordance with its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in order for the Organization to carry out its purposes and functions.") 아울러 이 기구가 Parvia에서 댐을 건설하는 데 동의하였다.

7. DEDO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Parvia에서 댐의 건설을 위한 기초공사를 추진하였는데, Parvus족은 댐 건설에 강하게 반발하였다. 기초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 계획에서 예정된 지역 바깥의 상당한 면적의 국유림이 파괴되고 이들 국유림 소재 지역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였다. DEDO는 공사를 속행하였는데, 2004년 창설 이래 개발 사업이 연속적으로 실패하여 기금이 고갈된 데다가 2010년 세계금융위기가 발발하자 같은 해 12월 DEDO는 파산을 선언하였다.

8. Montania 내에서는 Parvia에서 발생한 각종 손해에 대하여 Prosperia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이러한 여론을 배경으로 2011년 4월 Montania 정부는 Prosperia 정부에 구술서(note verbale)를 보내 Parvia 지역 댐 건설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대한 외교적 협의에 응할 것을 요청하였다. Prosperia 정부는 같은 해 10월에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의 형식으로 답을 주었는데, 그 요지는 이 문제는 국제기구인 DECO와 Montania 간의 문제로서 Prosperia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었다.

9. Prosperia의 이러한 외교적 대응에 Montania 국민은 반발하였는데, 특히 Parvus 족 구성원의 반응은 격렬하였다. Prosperia 내에 거주하고 있던 Parvia 출신자들은 평소 Prosperia 정부의 차별적인 이주노동자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Prosperia 정부의 2011년 10월 성명은 이들이 정치적으로 과격화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들은 Prosperia 내에서 비밀단체를 결성하여 비폭력저항을 표방하면서 Parvia 지역 댐 건설과 관련하여 Prosperia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였다.

10. 이러한 사태 발전에 위협을 느낀 Ambitiono는 비상수단을 강구하기로 결심하였다. Ambitiono는 자신의 주도 하에 Prosperia 정부 내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자국 및 Montania 내에서 활동하는 Parvia 출신 활동가를 제거하고 아울러 Parvia 주민을 위하하기로 하였다. Ambitiono는 2012년 3월 Prosperia의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 책임자에게 제거대상자의 목록을 건네주면서 이들의 제거를 지시하였다. 이 지시는 이행되어 2012년 4월 Prosperia 국내에서 5명, Montania 국내에서 3명이 살해되었다. 또한 Parvia의 수도 변화가에서 폭탄이 터져 200여 명이 사망하고, 5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11. 이들의 살해 직후 Prosperia의 관여를 추측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Prosperia의 개입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2012년 9월 Prosperia의 권위주의 체제에 불만을 품은 Prosperia 국가안전부 정보요원이 Prosperia의 비밀문서 파일을 Wikileaks를 통해 공개하였다. 이 파일에는 Ambitiono가 구성한 태스크포스의 활동 내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제거대상자의 목록, 제거 일시 및 방법, 폭탄 폭발 장소 및 시간 등이 실제와 일치하였다.

12. 외교적 곤경에 처한 Prosperia 정부와 Ambationo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2012년 10월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 골자는 Ambationo 등 Prosperia 정부 고위관계자의 관여는 전혀 없었으며, 국가안전부 하급직원들의 과잉충성심에서 빚어진 사태라는 것이었다. 이 성명에서 Prosperia 정부는 비록 하급직원들의 행위였지만 Prosperia 정부 구성원이 관여된 만큼, Montania 정부 측에 깊은 유감을 전달하고, 이 사태를 조속한 시기 내에 원만하게 타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13. 성명 발표 직후 Ambationo는 Montania의 외교장관에게 연락을 취해 이번 사태를 마무리짓는 합의를 조속히 체결하지 않으면 Prosperia가 Montania에 매년 제공하는 개발원조 3,000만 달러의 지급을 재검토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Montania 정부 역시 소수자인 Parvus족의 행위로 인해 양국 간 관계가 훼손되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던 관계로 양국 정부는 2012년 11월에 정부 간 협정을 체결하고 Parvus족 활동가 살해사건 및 민간인 폭사사건의 종결을 선언하였다. 이 협정 전문에서

Prosperia는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profound regret)을 표시하였다. 이 협정의 핵심 조항인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a) The Government of Prosperia shall provide 20,000,000 US dollars to the Government of Montania within 3 month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b) With the payment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a) of this Article, all the claims of the Government of Montania and its nationals against the Government of Prosperia and its nationals, arising from the tragic incident of April 2012, shall be regarded as waived completely.

14. 이 협정은 양국 내 발효 절차를 거쳐 2013년 1월에 발효하였고, 같은 달 Prosperia 정부는 2천만 달러를 Montania 정부에 지급하였다. Montania 정부는 지급 받은 액수 중 1천 8백만 달러를 Parvia 지역 댐 건설로 인한 환경오염 제거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백만 달러를 Parvia 활동가 유족, 폭탄 피해 사망자 유족 및 폭탄 피해 부상자들에게 원호금 형식으로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이들은 수령을 거부하였다.

15. 2013년 3월 Montania에서는 민주화 운동이 발발하여 같은 달 권위주의 정부가 퇴진하였다. 2013년 4월 선거에 의해 집권한 민주정부는 인권존중과 사회 전반의 민주화를 표방하면서 Prosperia와 양자관계를 재정립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Montania의 신임 외교장관은 2012년 11월 정부간 협정의 무효(invalidity)를 선언하고, 2005년 4월 Montania 국회가 제정한 ‘국제범죄로서의 제노사이드에 관한 특별법’(Special Law on the International Crime of Genocide)의 관련 조항에 기초하여 Prosperia의 내무부장관인 Ambationo의 국제체포영장(international arrest warrant *in absentia*)을 발부하였다. Montania 정부는 이를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에 전달하였고, Interpol은 이를 국제적으로 배포(circulate)하였다. 이에 Ambationo는 같은 달 예정되었던 Batania에의 방문 계획을 취소하고, Montania의 조치를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력히 비난하였다.

16. 한편 살해당한 Parvus족 활동가 유족 중 Montania 거주자들은 2013년 4월 자국 법원에 Prosperia 정부를 상대로 천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Montania 사회 전반의 민주화의 흐름 속에서 Montania 사법부도 그 동안 인권보호(특히 소수자의 인권보호)에 소홀했던 점을 반성하면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천명하였다. 2013년 5월 Montania 법원은 이 소의 수리를 결정하였는데, 이에 Prosperia 정부는 외교부 성명을 통해 Montania 법원의 조치는

2012년 11월 협정을 통해 이미 해결된 문제에 관해 자국의 국가면제를 침해한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였다.

17. 이러한 사태 발전에 깊은 우려를 품게 된 Dexia 지역 국가들은 Prosperia 정부와 Montania 정부에 양국 간의 분쟁을 ICJ에 회부하도록 외교적 설득을 행하였다. 양국 정부는 이러한 권고를 수용하여 2013년 6월 분쟁의 ICJ 회부를 위한 특별합의(compromis)를 체결하였다. 특별합의 제3조는 ICJ의 판단을 구할 사항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 (1) DEDO의 Parvia 지역에서의 댐 건설 공사로 인해 발생한 산림파괴와 환경오염에 대해 Prosperia에 국제책임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2) 2012년 4월 “비극적 사건”의 Montania 국적 피해자들의 개인적 청구권(individual claims)이 2012년 11월 Prosperia와 Montania의 정부간 협정에 의해 국제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었는지 여부
- (3) 2013년 4월 Montania가 자국의 관련 국내법에 기초하여 Prosperia의 현직 내무장관인 Ambationo에 대한 국제체포영장을 발부한 후 Interpol로 하여금 국제적으로 배포한 것이 국제법 위반인지 여부
- (4) Parvus 활동가 유족 중 Montania 거주자들이 자국 법원에서 Prosperia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2013년 5월 Montania 법원이 수리함에 따라 Prosperia의 국가면제가 침해되었는지 여부

(관련사실: Prosperia와 Montania는 1957년 이래 UN회원국이며, 1980년 이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의 당사국이다. Montania는 국제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2005년과 2007년에 국제형사재판소(ICC) 로마규정(Rome Statute), UN관할권면제협약(UN Convention on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States and Their Property)을 각각 비준하였다. 이에 반해 Prosperia는 아직까지 두 조약 모두 비준하지 않았다.)